

농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55호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경제문화국장
제출연월일	2023. 4. 11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5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체육진흥과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서 정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.(안 제5조의2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2692(2023. 3. 15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복지정책과-9171(2023. 3. 20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2846(2023. 3. 8.)호]
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3. 7. ~ 2023. 3. 27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체육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
2.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
3.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체 육 진 흥 과 장	김 일 규
	체 육 정 책 팀 장	정 재 룡
	담 당 자	이 도 영 (746-575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</u> <u>2.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</u> <u>3.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</u> <p><u>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세출

- 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

○ 세출

- 논산시체육회 : 260,000천원
(인건비 200,000천원, 사무관리비 60,000천원)
- 논산시장애인체육회 : 170,029천원
(인건비 129,625천원, 사무관리비 40,404천원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시비 100%

3. 작성자

체육진흥과장 김 일 규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시 비	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세 출	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307-03.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 논산시체육회 운영비		260,000	265,200	270,504	275,914	281,432	1,353,050
307-03.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		170,029	173,430	176,898	180,436	184,045	884,838
재원 조달	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	지방세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※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 상승에 따른 2%(년) 상승분 반영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